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98호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21호(2017.11.23.)로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 송파구 고시 제2023-9호(2023.1.10.)로 정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가락극동아파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없음)

지정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8	가락동	192	4.0	210	50	-	2	공동	- 가락극동아파트 - 통학로 확보 (송파중교)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동남로18길 9 (가락동 192번지)	40,111.5	-	40,111.5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는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0,111.5	-	40,111.5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3,050.0	-	3,050.0	7.6	순부담 면적 3,050㎡(7.6%)
	공 원	3,050.0	감) 341.7	2,708.3	6.8	
	도 로	-	증) 341.7	341.7	0.8	
획 지	소 계	37,061.5		37,061.5	9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용지	37,061.5	-	37,061.5	92.4	

4.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0,111.5	-	40,111.5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11.5	-	40,111.5	100.0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69	25~36	보조 간선	5,97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 도로	-	건고198 (’71.4.7)	
변경	대로	3	69	25~36 (3)	보조 간선	5,973 (4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 도로	-	건고198 (’71.4.7)	일부구 간확폭
기정	중로	3	165	12	집산	523	송파구 오금동 (대2-67)	송파구 가락동 (중3-160)	일반 도로	-	건고364 (’91.10.5)	
변경	중로	3	165	12~15.5	집산	523 (60)	송파구 오금동 (대2-67)	송파구 가락동 (중3-160)	일반 도로	-	건고364 (’91.10.5)	일부구 간확폭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69	대로3-69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30m→33m 증)3m - 연장: 43m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기존 공원부지 내 보도 확보
중로3-165	중로3-165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12m→15.5m 증)3.5m - 연장: 60m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기존 공원부지 내 보도 확보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소공원	가락동192 번지	3,050.0	감) 341.7	2,708.3	‘17.11.23. (서고 제2017-421호)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소공원	가락동 192번지	•면적 변경 - A=3,050.0㎡→2,708.3㎡ 감) 341.7㎡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기존 공원부지 내 보도 확보 로 공원 면적 감소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기준	면적 기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택지	• 10+(999-50)×0.05 이상	160.0	-	160.0	-
	주민 공동 시설 총량제	경로당	〃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300.0	증) 30	330.0	-
		주민공동시설	〃	-	1,200.0	감) 30	1,170.0	-
		어린이집	〃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450.0	-	450.0	-
		작은도서관	〃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300.0	-	300.0	-
		어린이놀이터	〃	-	1,300.0	-	1,300.0	-
		주민운동시설	〃	-	1,100.0	-	1,100.0	-
		다함께 돌봄센터	〃	-	150.0	-	150.0	-
		소계	〃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1,000세대: (999×2.5)× 1.25 이상	4,800.0	-	4,800.0	-
	경비실		〃	-	50.0	감) 19.0	31.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111.5	-	-	송파구 동남로 18길 9 (가락동 192)	9	-	-	9	-	-

※ 송파구고시 제2023-9호 오기정정 (정비개량계획(동) 철거 후 신축 : 11→9)

8.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정	가락극동 아파트	40,111.5	획지1	37,061.5	송파구 동남로 18길 9 (가락동 1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2.47 이하	299.81 이하	해발고도 152m이하/ 최고35층 이하	-																					
			공원	3,050.0		소공원	관계법령에 따름				-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111.5	획지1	37,061.5	송파구 동남로 18길 9 (가락동 1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2.47 이하	299.81 이하	해발고도 152m이하/ 최고35층 이하	-																					
			공원	2,708.3		소공원	관계법령에 따름				-																					
			도로	341.7		도로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 율	기정	●주택공급계획: 975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2호)																														
		<table><tr><th colspan="2">구 분 (전용면적)</th><th>세 대 수 (세대)</th><th>비 율(%)</th><th>비 고</th></tr><tr><td colspan="2">합계</td><td>975</td><td>100.0</td><td>-</td></tr><tr><td rowspan="2">85㎡이하</td><td>60㎡이하</td><td>283</td><td>29.0</td><td rowspan="2">소형주택 122세대 포함(12.5%)</td></tr><tr><td>60~85㎡이하</td><td>497</td><td>51.0</td></tr><tr><td colspan="2">85㎡초과</td><td>195</td><td>20.0</td><td>-</td></tr></table>										구 분 (전용면적)		세 대 수 (세대)	비 율(%)	비 고	합계		975	100.0	-	85㎡이하	60㎡이하	283	29.0	소형주택 122세대 포함(12.5%)	60~85㎡이하	497	51.0	85㎡초과		195
구 분 (전용면적)		세 대 수 (세대)	비 율(%)	비 고																												
합계		975	100.0	-																												
85㎡이하	60㎡이하	283	29.0	소형주택 122세대 포함(12.5%)																												
	60~85㎡이하	497	51.0																													
85㎡초과		195	20.0	-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80.0%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변경	●주택공급계획: 999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2호)									
		구 분 (전용면적)				세 대 수 (세대)	비 율(%)	비 고			
		합계				999	100.0	-			
		85㎡이하	60㎡이하				276	27.6	소형주택 123세대 포함(12.3%)		
			60~85㎡이하				525	52.6			
		85㎡초과				198	19.8	-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80.2%										
심의완화 사항 (변경없음)		●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정비계획용적률(242.47%)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81%)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 전체 건축한계선 : 6m (단, 공동주택용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3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공공보행통로 : 단지내 B=8m이상 -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및 통학로 확보 ●동남로18길, 오금로44길변 주민공동시설 우선 배치 - 생활가로변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40,111.5㎡	37,061.5㎡	3,050.0㎡	0㎡

구분		산정내용														
공공시설부지 총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3,050.0㎡ - 0㎡ = 3,050.0㎡														
개발가능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기부채납완화용적률 = 210% + 10% + 22.47% = 242.47%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인센티브</th></tr><tr><td rowspan="2">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td><td>에너지효율인증1등급</td><td rowspan="2">8%</td></tr><tr><td>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td></tr><tr><td>신·재생 에너지 공급률</td><td>20%이하~15%초과</td><td>2%</td></tr><tr><td colspan="2">합 계</td><td>10%</td></tr></table>		구 분		인센티브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인증1등급	8%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20%이하~15%초과	2%	합 계		10%
		구 분		인센티브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인증1등급	8%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20%이하~15%초과	2%														
합 계		10%														
기부채납 완화용적 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인센티브(10%) = 220%															
	※ 허용 인센티브(에너지효율인증/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정비계획 용 적 률	기부채납 완화용적 률	•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10% × (1.3 × 0.082296) = 22.47%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3,050.0㎡ ÷ 37,061.5㎡ = 0.082296														
정비계획 용 적 률		• 242.47% 이하														
법적상한 용 적 률		• 법적상한용적률 : 299.81%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①기준 용적률	항 목		인센티브	적용 여부	③허용용적률 (①+②)
210%	우수디자인		15%	-	220%
	장수명주택	· 우수등급 이상	10%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 1, 녹색 최우수	12%	-	
		· 에너지 1, 녹색 우수	8%	적용	
		· 에너지 2, 녹색 최우수	8%	-	
		· 에너지 2, 녹색 우수	4%	-	
	신재생에너지	· 20% 초과	3%	-	
		· 20% 이하 ~ 15% 초과	2%	적용	
		· 15% 이하 ~ 10% 초과	1%	-	
	지능형건축물	· 1등급	15%	-	
		· 2등급	12%	-	
		· 3등급	9%	-	
		· 4등급	6%	-	
	역사문화보전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정 등(위원회 인정)	5%	-	
②인센티브 적용 계			10%		최대 20% 이내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
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
공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가) 임대주택 건설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 고 (연면적)
기정	획지	37,061.5	-	122세대	59㎡ : 92세대 74㎡ : 10세대 84㎡ : 20세대	기준: 10,625.53㎡ 계획: 10,671.12㎡
변경			-	123세대	59㎡ : 95세대 74㎡ : 10세대 84㎡ : 18세대	기준: 10,625.53㎡ 계획: 10,698.13㎡

나)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계획 기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299.81% 이하				
상한용적률		242.47%				
공공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99.81\% - 242.47\% = 57.34\%$				
	증가된 용적률의 50%	$57.34\% \times 0.5 = 28.67\%$ $37,061.5\text{㎡}(\text{대지면적}) \times 28.67\% = 10,625.53\text{㎡}$				
	의무 연면적	10,625.53㎡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8	80.41	92	7,397.72	
		74.98	100.00	10	1,000.00	
		84.98	113.67	20	2,273.40	
		합 계		122	10,671.12	> 10,625.53㎡

<변경>

계획 기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정상한용적률(건축계획)		299.81% 이하				
상한용적률		242.47%				
공공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99.81\% - 242.47\% = 57.34\%$				
	증가된 용적률의 50%	$57.34\% \times 0.5 = 28.67\%$				
	의무 연면적	$37,061.5\text{㎡}(\text{대지면적}) \times 28.67\% = 10,625.53\text{㎡}$				
공공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8	80.41	95	7,638.95	
		74.98	100.61	10	1,006.10	
		84.98	114.06	18	2,053.08	
		합 계		123	10,698.13	> 10,625.53㎡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변경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자연지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건축배치 ●지형 고저차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 제시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
환경보전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 면적율	30%	○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상지내 조경수 식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포장지 및 주거지역임	●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만족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 가지표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녹지 계획	●조정계획 등을 반영하여 녹지공간 확보
	비오톱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톱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조정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향상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지형 변화 및 토공량 발생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생활 환경	일조	-	○	●제3종일반주거지역 ●북측지역 도로, 주거 및 상업시설이 위치함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청정연료 사용 및 조정식재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가로녹 시율	○	●조정수목 식재되어 있음	●건축물 외곽 조정식재 계획 → 가로녹시율 증가
	보행 친화 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음	●대상지내 주민공동시설, 주거동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	-
		자전거보관소 15대/ 100unit	○	-	-
환경 영향	폐기물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송파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진동		○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운영시 주변 가로망에 의한 소음 영향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현장여건에 적합한 도로소음 저감 시설 설치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 로부터 4년 이내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555	975	420	임대주택 122세대 포함
변경				555	999	444	임대주택 123세대 포함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서측으로 송파중, 가주초, 가동초 입지	-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북서측 동남로(30m) 건너 입지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 반경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학교정문 반경 200m 이내) 지정으로 관련규정상의 제한용도 건립금지 • 추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 대상지 북서측으로 송파중교, 가주초교, 가동초교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근생시설 배치로 일조권 확보 및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조합설립 이후 사업추진 단계로 이주·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특이사항 없음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분명한 시야 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앴 • 내부 공원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

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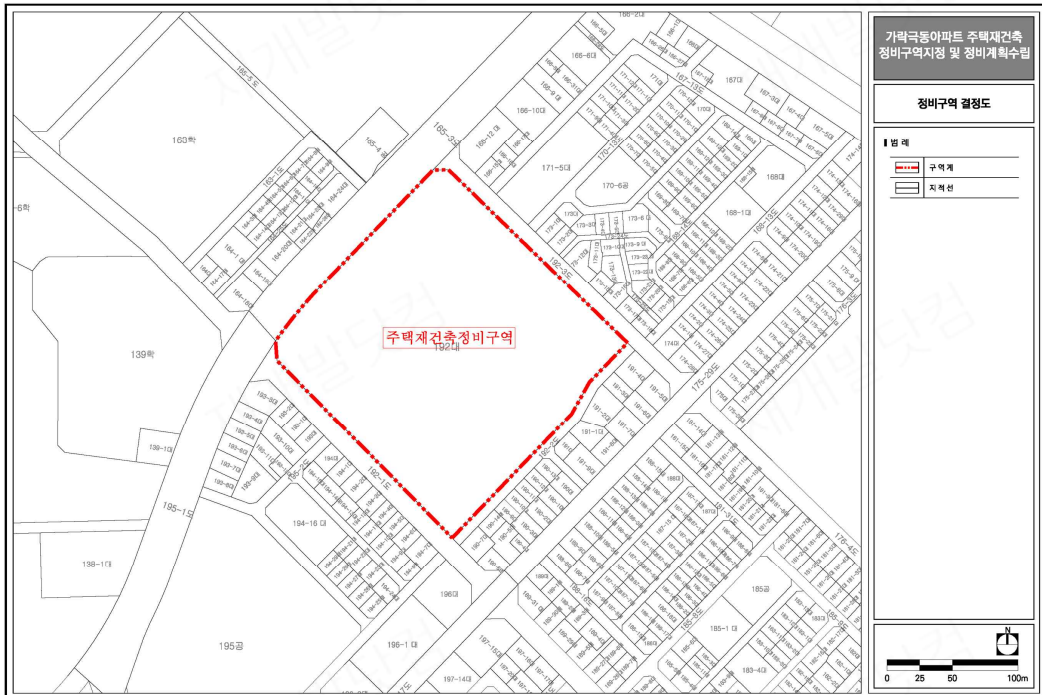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도(기정/변경)
6.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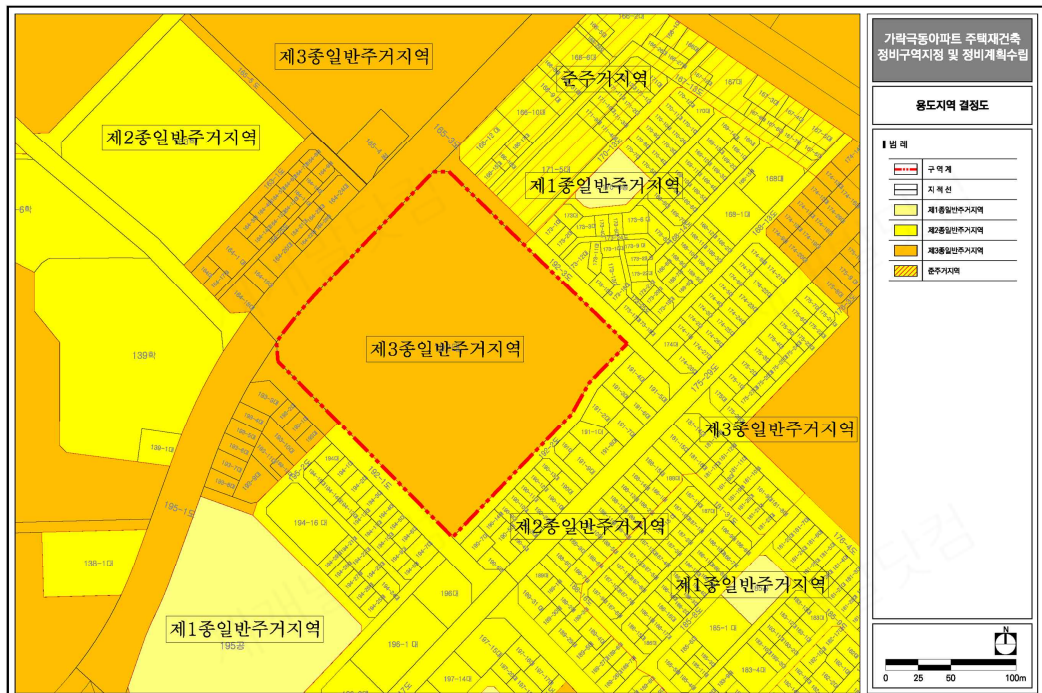
III.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I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 주택사업과(☎02-2147-290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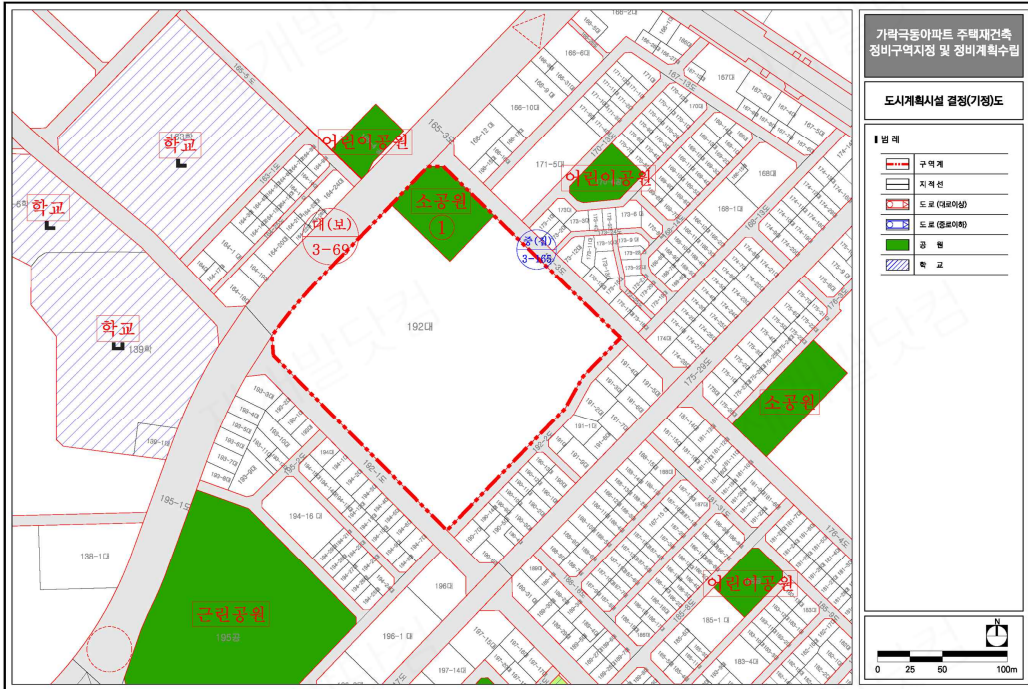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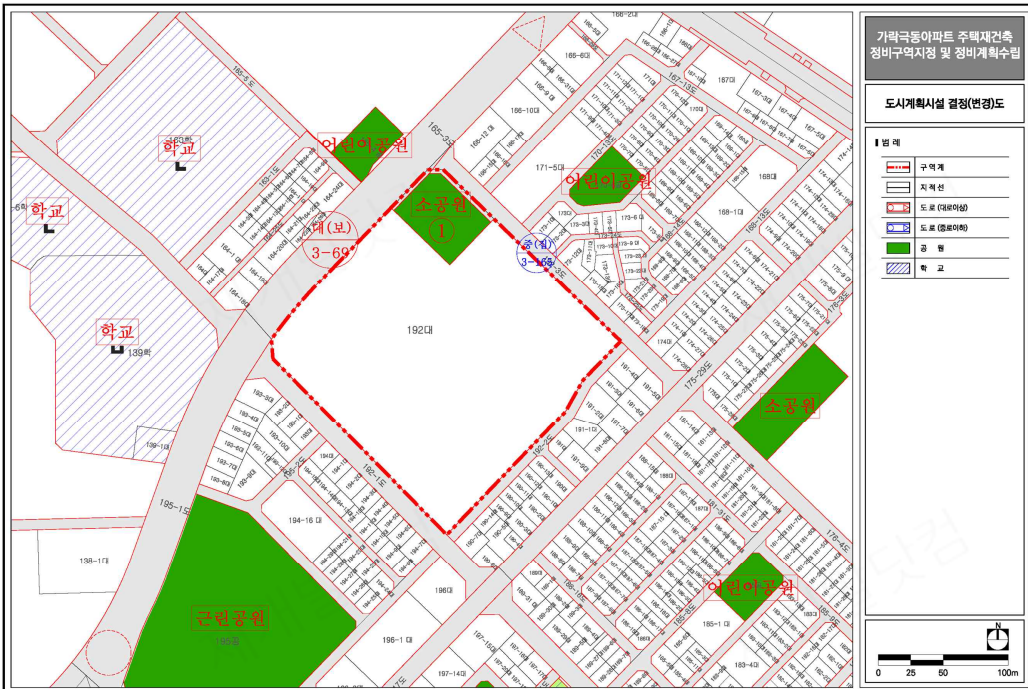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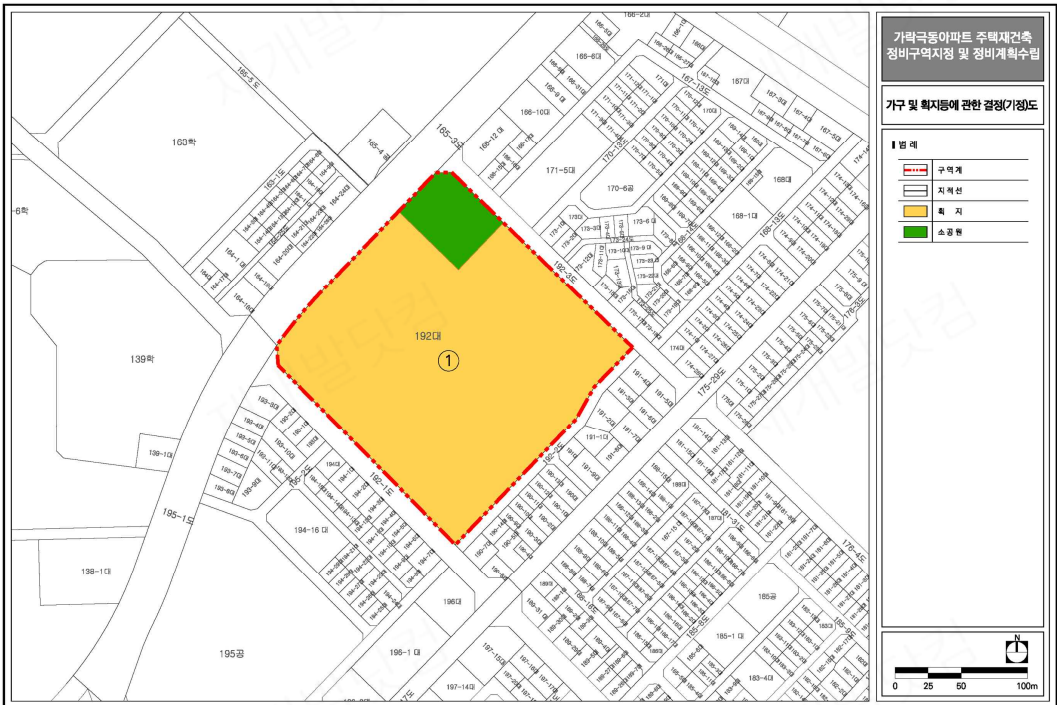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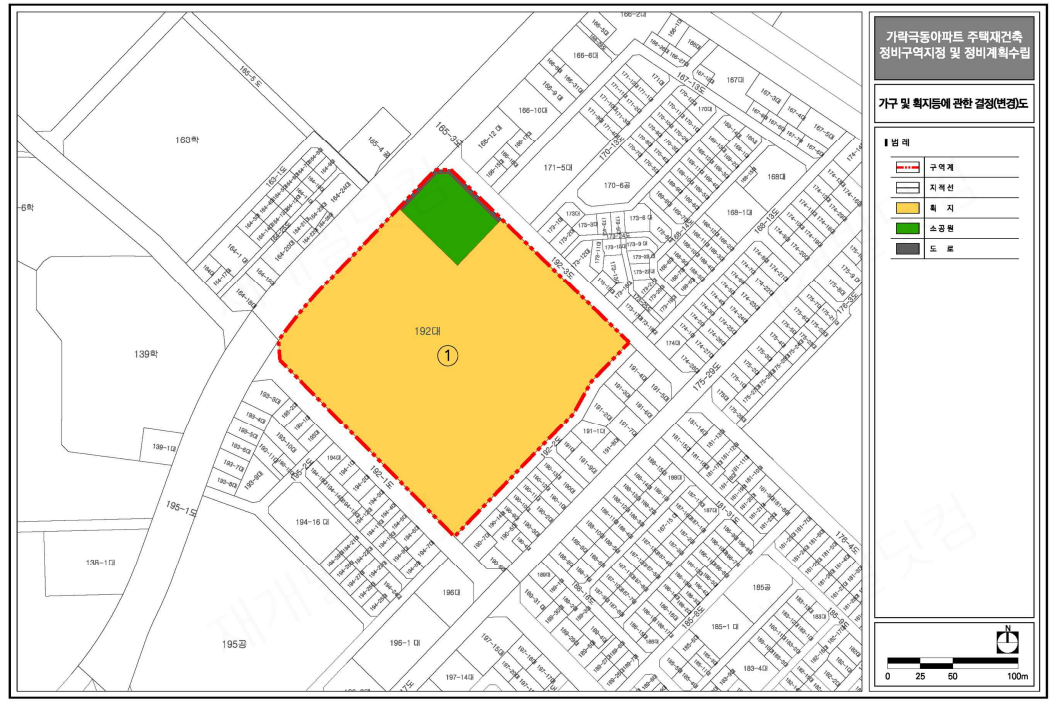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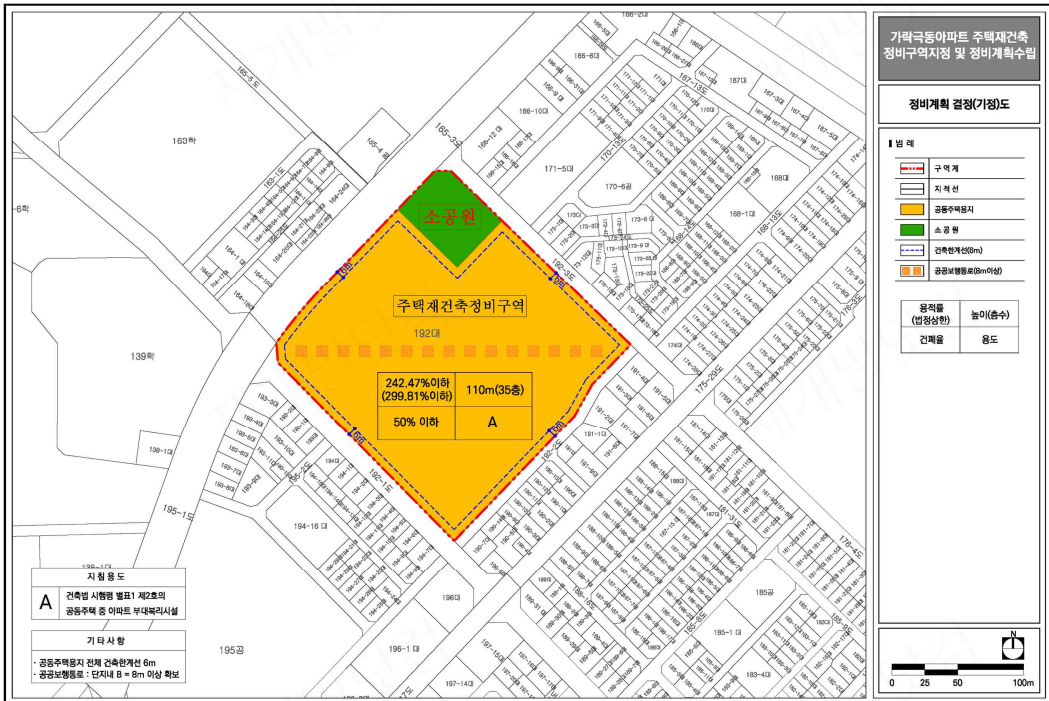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도(기정)



■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